

공정거래법개정안 국회 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최근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자배구조의 선진화,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 허용 등이 진행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계열회사간의 채무보증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하고 기존 채무보증은 2000년 3월말까지 완전해소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제6차 개정안이 지난 1998년 2월 15일 제188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되는 출자총액의 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동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공정거래법개정안의 주요골자 ◆

-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당해회사 순자산의 25% 이내)제도를 폐지함(제10조 삭제)
-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간의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함(개정법 제10조의2제1항)
- ♣ 기존 채무보증(기한연장을 위해 재약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2000년 3월말까지 완전해소토록 함. 다만, '98년 이후 신규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는 기존 채무보증을 2001년 3월말까지로 하되, 2001년 이후 신규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완전해소토록 함(개정법 제10조의3제1항 신설)
-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던 관련조항을 정리함(개정법 제10조의2 제4항)

獨占規制 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中 改正法律

〈신·구조문대비표〉

現 行	改 正 内 容
<p>第10條(출자총액의 제한) <u>①~⑨</u></p> <p>第10條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p> <p><u>① 대규모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 한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액의 잔액의 합계액(이하 “채무 보증총액”이라 한다)이 당해 회사 자기자본에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이하 “채무보증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 보증의 경우에는 이를 채무보증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u></p> <p><u>② 제1항에서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u></p> <p><u>1.중소기업은행 및 국민은행</u></p> <p><u>2. 단기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u></p> <p><u>3. ~ 6. (생략)</u></p> <p><u>③~④ (생략)</u></p>	<p>第10條(출자총액의 제한) <u>①~⑨〈삭제〉</u></p> <p>第10條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p> <p><u>① 대규모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 한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u>②</u></p> <p><u>1. 및 중소기업은행</u></p> <p><u>2.〈삭제〉</u></p> <p><u>3. ~ 6. (현행과 같음)</u></p> <p><u>③~④〈삭제〉</u></p>

공정거래위원회 업무활동 1

現 行	改 正 内 容
第10條의3(기존 채무보증의 해소) 〈신 설〉	<p>第10條의3(기존 채무보증의 해소) ① 제14조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제한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정당시의 채무보증잔액(이하 “기존 채무보증”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날까지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해소시한의 연장을 요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u></p> <p>1. 1997년도에 지정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서 1998년에 채무보증제한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2000년 3월 31일</p> <p>2.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중에 신규 지정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2001년 3월 31일</p> <p>3. 2001년 이후에 신규 지정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지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p> <p>② 제1항의 기존 채무보증에는 기한연장을 위하여 재약정하는 채무보증을 포함하고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p>
第14條(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등) ① ~ ② (생략) ③ 및 제3항,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 또는 제10항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제1항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p>第14條(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또는 제3항 통지가 있는 날부터 1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공정거래위원회 업무활동 1

現 行	改 正 内 容
<p>1. ~ 3. (생략) ④ (생략) ⑤ <신설></p> <p>第14條의3(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생략) 1. (생략) 2.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3. (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의 제한) 4. (생략)</p> <p>第15條(탈법행위의 금지) ①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제1항</p> <p>1. (생략)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u>이 경우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최근에 취득한 주식을 정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다.</u>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p> <p>第17條(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또는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p>	<p>1. ~ 3. <삭제> ④ (현행과 같음) ⑤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p> <p>第14條의3(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p> <p>3. (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의 금지) 4. (현행과 같음)</p> <p>第15條(탈법행위의 금지) ①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제10조의3(기존 채무보증의 해소)제1항</p> <p>1. (현행과 같음)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이하 삭제></p> <p>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第17條(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p>

공정거래위원회 업무활동 1

現 行	改 正 内 容
<p>②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제1항</p> <p>③ (생략)</p> <p>④ <신설></p>	<p>②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제1항, 제10조의3(기존 채무보증의 해소)제1항</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p>
<p>第18條(시정조치의 이행확보) ①~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생략)</p>	<p>第18條(시정조치의 이행확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삭제></p> <p>④ <삭제></p>
<p>第66條(벌칙) ① (생략)</p> <p>1. ~ 3. (생략)</p> <p>4. 또는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p> <p>.....</p> <p>5.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의 금지)제1항</p> <p>.....</p> <p>6. ~ 9. (현행과 같음)</p>	<p>第66條(벌칙) ①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의 규정에</p> <p>.....</p> <p>5.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제10조의3(기존 채무보증의 해소)제1항</p> <p>6. ~ 9. (현행과 같음)</p>
<p>第67條(벌칙) (생략)</p> <p>1. ~ 6. (생략)</p> <p>7.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8항[제10조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p>	<p>第67條(벌칙)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제5항...</p> <p>.....</p> <p>.....</p>
<p>第69條의2(과태료) ① (생략)</p> <p>1. (생략)</p> <p>2. ~ 5. (생략)</p> <p>② ~ ⑥ (생략)</p>	<p>第69條의2(과태료) ① (생략)</p> <p>1. <삭제></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